#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 제3039호

제출년월일 2022. 8. . 제 출 자 김포시장

### 1. 제안이유

가. 공공체육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체육 종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위탁기간 : 2022. 10월 ~ 2024. 12월(3년)

나. 수 탁 자 :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

다. 위탁방법 : 민간 위탁(공개모집 / 심사위원회 심사)

라. 위탁시설 : 양촌읍 학운리 3198 / 양촌파크골프장 (시설면적 : 28,680 m²)

구 분	시 설 명	비고
운동시설	파크골프장 9홀, 퍼트연습장, 농구장(반코트)	
부대시설	관리실1동, 화장실1동	

마. 위탁내용 : 공공체육시설 운영 전반

바. 위탁사무 : 공공체육시설 운영

- 양촌파크골프장(부속시설 포함) 및 부대시설 등의 관리·운영

- 시설 사용료, 기타 수입금의 징수 등

### 사. 지원계획

- (관리자) 행정인력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

- (위탁운영비) 시설 유지·보수·관리, 공공운영비 등 지원

## 3. 관계법령

가. 「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

나. 「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운영 조례」제20조(위탁관리)

다. 「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## 4. 예산수반사항

가. 예정금액 : 83백만원 이내

나.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

(단위:백만원)

2022년도	2023년도	전년대비
요구액	요구액	증감액
18	83	65

소관 실·과·소		체육과	
입	실·과·소장 성 명	체육과장 문 상 호	
안	팀 장 직위·성명	체육시설팀장 임 영 순	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지방행정주사보 원 선 아( <b>☎</b> 2586)	

# 비용추계서

#### 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  -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운영 조례 제20조 3항
- 나. 비용 발생 요인
  - 양촌파크골프장 및 부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필요

#### 2. 비용추계

- 가. 비용추계의 전제
  - 운영비, 관리자 인건비, 위탁시설 유지·보수비 반영
- 나. 비용추계결과

(단위: 천원)

구 분		2022년	2022년 2023년 2024년		계
총 소요액		17,593	82,875	88,875	189,343
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	인건비	16,593	66,425	66,925	149,943
	시설운영비	1,000	16,450	21,950	39,400

- 다. 재원조달방안 : 2022년 2회 추경 및 2023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
  - 기획담당관 협의필
- 3.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
  - 해당없음
- 4. 작성자: 행정국 체육과 과장 조재국 팀장 임영순

# 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: 천원)

	구 분	1차연도	2차연도	3차연도	계
,	에 입	0	9,000	11,250	20,250
대관료		0	9,000	11,250	20,250
세 출		17,593	82,875	88,875	189,343
인건비		16,593	66,425	66,925	149,943
,	시설운영비	1,000	16,450	21,950	39,400
재원 조달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
	보조금				
	지방교부세				
자체 수입	소 계	0	9,000	11,250	20,250
	세외수입	0	9,000	11,250	20,250
지방채					
기 금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
그 밖의 사항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

# 참고1 관계법령

## □ 체육시설의 설치 · 이용에 관한 법률

제9조(<mark>체육시설의</mark> 위탁 운영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<u>제5조제1항</u> 및 <u>제6조</u>에 따른 체육시설과 <u>제7조제1항</u>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<mark>체육시설의</mark>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<mark>체육시설의</mark>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# □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

제20조(위탁관리)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「지방 공기업법」에 따라 김포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이나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- ② 삭제 <2020.03.25.>
-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삭제 <2020.03.25.>

## □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-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-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- 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- ②시장은 제1할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- ③삭제 <2020.02.14.>
- ④시장은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

제14조 (협약체결 등)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.

- ②협약서에는 위탁기관,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, 수탁기관의 의무·준수사항,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,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- ③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- ④시장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.